

비대면 원격수업 및 대면기반 융합수업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교수용)

1. 목적

상명대학교는 코로나19 위기대응 학사운영 방안에 따라 ‘비대면 원격수업 및 대면기반 융합수업’으로 학습자의 수업을 보장하기 위해 강의녹화시스템/실시간 화상강의 동영상, 자체 제작 콘텐츠 등 다양한 강의자료를 제공하여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의녹화시스템/실시간 화상강의 및 자체 제작 콘텐츠’에 사용되는 자료 등 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도록 e-Campus 이용안내-자료실 ‘원격수업 저작물 이용 가이드’를 확인하셔서 강의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녹화시스템/실시간 화상강의, 자체 제작 콘텐츠와 수업운영에 필요한 자료 역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형사상 법적 문제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원격수업 저작물 이용 가이드’ 내용을 숙지하여 강의 녹화/제작 및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유의사항 안내

대학이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재학생)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그러므로 교·강사분들은 온라인 수업 강의 동영상 제작 및 운영 시 ‘원격수업 저작물 이용 가이드’의 ‘공정이용’,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공유저작물’, ‘CCL 표시 저작물’ 이용 범위 내용 및 ‘저작물 출처 표기 방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타인의 저작물을 강의 동영상 제작 및 강의 자료에 포함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오프라인 수업 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명시는 ‘원격수업 저작물 이용가이드’의 ‘저작물 출처 표기 방법’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제방지조치(기술적 조치)는 서비스제공자(상명대학교 및 교수)가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하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기술로서, 기술적 조치에 의하여 인지한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 및 송신제한 조치와 ‘경고문구’의 발송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강의녹화시스템/실시간 화상강의 및 자체 제작 콘텐츠와 강의 자료에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우리 대학교 경고문구를 삽입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본 강의 동영상 및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본 강의 동영상 및 자료는 상명대학교 재학생들의 수업목적으로 제작·배포되는 것이므로, 수업목적으로 내려받은 강의 동영상 및 자료는 수업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장소 및 타인에게 복제, 전송하여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행위 주체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접근제한조치**: 수업을 받는 학생들만 강의 동영상 및 강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강의 동영상 및 강의 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제한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강의 동영상 및 강의 자료 파일을 **상명대학교 ‘e-Campus에 직접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접근 제한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장**)

나) 강의 동영상 파일을 **YouTube에 업로드**하는 경우 **일부공개** 또는 **미등록 옵션의 접근제한조치**를 이용해 강의 동영상 파일을 공유하고 **상명대학교 e-Campus에서 ‘이러닝 콘텐츠(임베디드 방식)’** 업로드 경우에는 추가 접근 제한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강의 동영상 및 강의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제한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명대학교 e-Campus 강의실 ‘자료 및 활동 추가’ 각 기능별 등록(수정) 화면에서 접근제한 추가(날짜:시작, 종료일시)를 이용하여 해당기간 이후에는 강의 동영상 및 강의 자료에 대한 학생의 접근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자주 묻는 저작권 사례 안내

1) 출판사가 제공하는 PPT는 저작물성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강의 동영상 제작전에 출판사로부터 강의 동영상 제작에 대한 이용 동의를 받으셔야 하며, 또한 자료에 대한 온라인 배포 및 전송 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출판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판사가 제공하는 PPT를 이용해서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 전송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PPT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의 동영상 제작 시 PPT 내에 사용하는 어문 저작물(논문, 소설, 수필, 시 등),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분량(시간)은 **‘원격수업 저작물 이용가이드’**에 안내되어 있는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에 의한 적법한 이용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어문저작물: 전체의 10% 미만 내에 이용
- 음악저작물: 전체의 20% 미만(최대 5분)내에 이용
- 영상저작물: 전체의 20% 미만(최대 15분)내에 이용

2) 수업에서 교재로 채택한 교과서에 실린 문제 및 풀이는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작권법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문제 및 풀이를 수정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3) 강의 자료에서 참고할 자료에 대해 인터넷 링크를 거는 것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가능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저작물 관련 사항 및 내용은 **e-Campus 이용안내-자료실 ‘원격수업 저작물 이용가이드’**와 별첨자료인 **‘저작권 안내, 저작권 사례를 통해 알아 본 올바른 교육정보 공유 방법’**(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교육자료 2017-27)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